

〈 특 집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방향*

趙弘植**

I. 문제의 제기

그 동안 법학교육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의 개혁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법학교육체제가 가지는 한계로는 ① 교육 및 입시제도의 과행화, ② 법학교육 및 대학교육전반의 부실화, ③ 고시산업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화, ④ 폐쇄적 법조체제의 형성요인화, ⑤ 법조의 시대적 적응능력 저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의 요약·반복을 피하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방안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한다. 이 글은, 왜 법학전문대학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되, 그 초점을 교육의 측면에 맞추어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글은 현재의 법과대학의 지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이 글은, 법조충원 방법과 연계된 제문제에 대해서 그 언급을 자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현재의 법과대학과 함께 병존하든지 아니면 현재의 법과대학을 대체하든지에 관계없이,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적 측면에서 지향하는 내용에 관해서만 살피기로 한다.

II.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체성: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하는, 양성하여야 할 법률가는 무엇인가?

21세기가 강요하는 변화는, 우리 법조의 병리적 현상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법조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하는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는 법조로 하여금 그 전문·기술성의 양적·질적 확장을 통해, 범지구적으로 보

* 이 글은 2004년 5월 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양성에 대한 검토”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편화, 일반화의 변혁을 겪고 있는 법체계를 새로이 구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담론능력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가 요청하는 법담론능력은 단순히 형식적 법규담론의 갱신에서 얻을 수 없다. 세계화 자체가 강대국 중심의 세계체제의 재편이라는 점에서 경제와 문화, 또는 국제정치 전반에 대한 지식이 뒷받침될 때야 비로소 그러한 법담론 능력이 구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법조가 세계화의 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반 실증과학들을 법과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법담론능력은 사회(·시장)의 각 부분영역에 포진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가를 법조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체계화시킴으로써, 법과 정치, 법과 경제가 결절을 극복하고 하나의 場에서 연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적어도 법조양성과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의 법학교육에 있어서는, 법지식의 전수·훈련뿐만 아니라 경제·경영 또는 무역이나 정보, 각종 사회 생활관계들에 관한 지식들을 법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법담론능력은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생활욕구들을 법적으로 整序하고 그것을 사법과정에 포섭할 수 있는 지식과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법조는 일상적 수준에 있어서도 일반대중의 정서와 생활감각에 익숙하여야 하고, 이를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조는, 사회(·시장)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요를 인식하고 여기에 법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구를 충족하는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계화시대에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장과 정부, 어느 쪽에서나 일할 수 있는 법률가를 기를 수 있을 것이며, 법원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향

1. 현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법학교육체제는, 고시제도가 존치하는 한, 법적 소양의 함양이 결여된 법률기술자의 양산에 그친다. 먼저 현제도에 의할 경우 대학교육과정에서부터 곧장 법률이론교육에 치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정의 한계

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일상생활을 인식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 교양교육의 기회가 없게 된다. 또한 법학 외적인 전공지식의 교육기회가 제한됨으로써 법률이론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이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인식능력이 결여되기 쉽다. 따라서 법률이론·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일상생활을 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기회가 없다. 결국 법률도그마에 따라서 기존의 범명제를 순환반복하는 법기술자의 양성과정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은 법률서비스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배치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방향

(1)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부에서의 충실한 교양교육을 전제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법률가상은 단순한 교양지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다양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일상생활을 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법률적 능력을 갖춘 전문가인 만큼, 법조의 다원성의 확보가 그 핵심이 된다. 따라서 학부과정에서 자유로운 사고능력을 함양시키고 전공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제로 하는 학부교육에서는 자유로운 교양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사과정과 전문과정이 구조적으로, 또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각각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제로 하는 학사과정은 전문직업교육이 아니라 전문교육의 준비단계이고, 학자, 법조인, 의사, 경영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의 전문 인력은 학사과정에서의 준비 교육을 받은 후 직역별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성되는 것을 상정한다.

따라서 학사과정은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전문분야에 종사하든지 그들이 갖추어야 할 지적 성향, 태도, 그리고 행동양식을 체화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사과정은 학생들에게 주요 학문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력을 갖추게 하고, 사물에 대한 탐구적 접근을 습관화하도록 하며, 실제로 탐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숙지시키는 것이다.

미국대학들이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이 학사과정 교육은,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과 달리, 지성인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¹⁾ 이러한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의 학사과정의 교육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그것은 일반교육

(general education)과 전공교육(specialization)이다.

일반교육은 우리의 기초교양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의식, 주요 개념, 지식, 그리고 지식을 창출하고 적용하는 방법들을 교육하여 인간의 지적활동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학생들의 지적 관심을 고취하고, 이해력과 탐구 능력을 두루 갖추도록 한다. 이 과정의 교육은 전공과정의 교육에서처럼 심도 있는 것은 아니나, 각 분야의 진수를 맛보게 하거나 대표적인 표본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의 중요한 기능은 학생들이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적성과 지적 관심을 발견하거나 확인하여 학사과정에서의 전공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공교육은 모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가운데 한 분야를 선택하여 학사과정의 최소 약 1/3의 과목들을 이수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을 통해 미국 대학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심층적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초학문의 한 분야의 지식체계와 지식의 획득 및 적용 방법을 숙지토록 하여 탐구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키고 지적사고의 기강(discipline)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특정 분야의 전공교육도 특정 전문교육의 준비단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교육의 준비는 일반교육과 전공교육 모두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인의 자질과 능력이지 특정 전공학문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다. 따라서 전문교육을 하는 대학원과정의 입학 자격으로 선수과목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지만, 선수 학과가 지정되는 경우는 없다.²⁾

요약컨대, 미국의 대학들은 학사과정에서 기초학문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그 가운데 한 분야에 대한 깊은 교육을 통해 탐구 정신과 지적 능력을 두루 갖춘 지성인을 배양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원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는 단계적 교육체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교육체계는 기초학문의 발전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미국 대학들의 기초학문 중심의 학사과정은 현대 사회의 지성인의 양성이라는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 1) Stanford대학은 학사과정의 이러한 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자유교육이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의 습득과 진취적 정신의 함양을 통하여 좀더 나은 인생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그것은 또한 차후에 받게 될 전문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합리적 정신을 배양하여 준다...”
- 2) Columbia 대학은 이러한 생각을 잘 요약하고 있다. “전공과정에 대한 필수요구는 학생들에게 특정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쌓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공과목들은 학생들을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개설되었거나,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일하게 되리라는 가정 하에서 개설된 것은 결코 아니다.”

목적은 갖고 있고, 대학원들은 미국 사회의 전문 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러한 학사과정의 졸업을 입학의 전제로 부과하고 있다. 이 두 과정의 단계적 결합을 통해 기초학문 교육이 모든 전문 인력들에게 강제된다. 이 강제된 기초학문 중심의 자유교육이야말로 미국이 기초학문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방향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학부에서 자유로운 교양교육을 통해 얻게 된 Sein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토대로, Sein을 포섭하는 다양한 법방 법론을 배우고 개발하고 종합하며, 나아가 Sollen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1)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법응용능력의 배양이다. 법응용능력은 다양한 사회적 욕구나 이해관계를 어떻게 법적으로 포섭하며 어떻게 반론에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바로 이러한 법응용능력의 배양에서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부연하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법응용능력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어떤 특정한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그와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사건과 현상을 분석·이해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법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전자조작에 대해서는 의학적 지식, 윤리적 판단, 법지식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계획을 상정할 수 있어야 이사의 법적 책임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인터넷 구조와 web business의 특성을 알아야 저작권의 범위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 각각에 상응하는 기초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후에 법학교육을 행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이라는 학문영역 자체를 발전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흔히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나치게 실무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기초법학이나 법이론의 탐구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고시제도가 만들어낸 교육과정이 현상태대로 고정되고 동시에 교수의 전공영역이 이와 연계해 고정되어 있는 폐쇄적 전공체계 하에서 더욱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 된다. 법학의 발전에 필요한 것은 학문적 관심에서 연유하는 부단한 문제제기와

그 규명작업이고, 이것은 연구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의실에서도 요구된다.³⁾ 미국의 Law School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법이론이나 기초법의 탐구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학자적 직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장치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인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도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오히려 법학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수들에게 자유로운 강좌개설권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교육과정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더욱 수월하다고 하겠다.⁴⁾

3)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 자체뿐만 아니라 학제간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기울인다. 다양한 배경학문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학제간 연구활동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법학전공자의 법조 영역 이외의 진출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법학 학위자들의 여타 대학의 진출까지도 현재보다 용이해진다. 이렇게 되면 지식의 공유를 통해 법학 영역의 확장, 법학 자체의 심화뿐만 아니라 법학의 종합응용과학으로서의 완성가능성까지도 명실상부하게 열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양학부의 교수진과 함께 법학전문학위/Ph.D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제간 연구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3.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의 기본구조와 교육내용

(1) 기본구조

- 명칭: 법학(전문)대학원
- 입학자격: 학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 입학시험: 학부성적 및 경력(사회경력, 사회봉사실적), 추천서, 법학적 지식을 요하지 않는 논술시험 등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결정
- 수업연한 및 이수학점: 6학기 (3년), 96학점 이상
- 총입학정원: 사회의 법조수요에 따라 적의조정
- 입학정원 250명, 전임교수 대 학생비율은 1:10 이하

* 법학대학원의 설립인가조건으로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12 이내로 한다. 교

3) 한상희, “법조 양성·충원제도의 개혁: 소위 법학전문대학원안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위원회 주최 2004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공청회 자료집, 39, 78-79.

4) Id. 79.

수의 숫자는 최소 15명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문교육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도 안되는 숫자로 교수의 전문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모델 대학원의 상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은 1:10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매년 대학원 입학생 수를 200명~250명 정도로 생각해보다면, 교수의 숫자는 60명~75명에 달해야 한다. 교수의 충원이 줄속으로 이루어질 때 생길 문제점을 감안하면, 교수의 충원은 연간 7~8명 규모로 5~7년간 계속 증원되어야 한다는 추산치가 나올 수 있다.

* 교수 대 학생 비율의 엄격한 책정은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수 수가 많아질 때 교과과목의 강좌가 그만큼 충실화될 수 있으며, 강의식이 아닌 대화식 교수법의 효용이 증대할 것이다. 무조건 법학대학원을 만들고 보자는 것에 대해, 교수수 요건은 질적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법학대학원의 남설을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따라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은 더 이상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처음 일본은 미국식 로스쿨에 가까운 법학대학원을 지향했으나 현실과의 타협으로 대부분의 대학에 대학원인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학생 30명, 교수 10명 정도의 대학에조차 설립인가를 해줌으로써 학부대학으로부터 대학원대학으로 왜 바꾸려고 하는지 취지조차 애매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우를 우리는 결코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학대학원은 지금보다 훨씬 충실한 전문교육을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현재의 학부의 법학교육, 대학원의 법학교육에다 사법연수원의 기본연수기능을 통합하여 법학대학원에서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전문대학원체제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우선 시설 면에서는 미국의 중위권 로스쿨의 수준에는 도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법학도서관의 대폭 확충, 정보화와 국제화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 모의재판 및 Legal Clinic을 수행할만한 여건의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는 안으로는 대학 내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고, 밖으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유도가 따라야 할 것이다.

(2) 교육내용

- 수업연한은 3년 6학기 이상, 이수학점은 96학점 이상으로 함
- 교육과정은 교양과목을 없애고 순수한 법률과목으로만 구성함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그 이수학점의 비율은 1:3 정도로 함

- 1년차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기본법, 법률정보론, 법조윤리, 기초법 등을 이수하도록 함
- 기본필수과목의 경우 강좌를 복수로 개설하여 동일과목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 2, 3년차에서는 모의재판, 실습 및 졸업논문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하되 다양한 세부전공영역을 개설함
- 실습은 법조영역(법원·검찰·변호사사무소), 기업, 정부, 시민단체에서의 현지실습과 Law Clinic 등에서의 교내실습을 주로 하며, 모의재판은 현직 법조인과 합동실시함
- 수업내용은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재의 법학교육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강연식보다는 문답식, 세미나식, 문제해결식의 강의방식을 채택하여야 함

* 법학대학원의 신입생은 이미 4년제 대학에서 인문, 사회, 자연 등 다양한 전공의 학사학위자이다. 이미 충분한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이 된 학생을 선발하게 되므로, 현재 학부제 법대와 달리 교양교육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그 점에서 3년의 과정은 학부 4년보다 집중적으로 법학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부 4년의 법학교육의 기간이 대학원 3년보다 더 긴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아니다. 학부생의 경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기에 교양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외국어·작문·타 전공에 대한 일정한 지식 등을 이수해야 하므로 실제로 법학전문교육에 전적으로 투입되는 시간은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대학 2~3학년의 지식소화수준 및 학업전념의욕은 대학원 1~2학년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또한 학부에서는 현재 연 2 학기를 개설하고 여름방학학기는 임의로 일부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원의 경우 연3학기를 상설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전문대학원의 3년은 전문법학교육의 이수기간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 방학기간동안 학부생들은 여행과 휴식, (농촌)봉사활동 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생의 경우 3년 동안 오직 법학 공부만을 선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인생충전을 위한 여유는 크게 가질 이유가 없다. 일반교육이 아닌 전문교육의 특성상, 방학기간은 법률관련 봉사활동이나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연수(internship)를 함으로써 실무적 지식을 충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